

의안번호	2204005
의 퇴 인	김문수 의원
회 답 일	2024.10.02.
추계번호	24C3818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인권위원회·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며,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8억 4,300만원, 2029년 16억 6,4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73억 2,100만원(연평균 14억 6,4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학생인권종합계획(안 제26조)	49	—	—	—	—	49	9.8
학생인권위원회(안 제27조)	4.4	8.8	8.8	8.8	8.8	39.6	7.9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안 제29조)	38.4	76.8	76.8	76.8	76.8	345.6	69.1
학생인권센터(안 제30조)	711	1,450	1,479	1,508	1,538	6,687	1,337
학생인권의 날(안 제36조)	40	40	40	40	40	200	40
합 계	843	1,576	1,605	1,634	1,664	7,321	1,464

- 주: 1) 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2) 학생인권센터 기능의 조직이 없거나, 조직의 장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우 또는 6급 이하인 교육청 등에 5급 상당의 학생인권옹호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임
 3) 학생인권옹호관 지원을 위하여 제정안의 학생인권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는 교육청에 6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을 각 1명씩 임용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임
 4)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연봉 상·하한액 중간값에 국회예산정책처의 공무원 보수상승률 및 공무원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 전망치 적용 금액을 합산한 결과값임
 5)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값으로 가정 등이 변동될 경우 결과값은 변경될 수 있음
 6) 법 시행일 등을 고려하여 2025년의 위원회(안 제27조 및 제29조) 및 학생인권센터(안 제30조)의 설치·운영비는 하반기(7~12월) 추계액만을 계산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 국가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지킬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 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안 제8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항)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3	안 제9조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제2항)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의 성장발달단계, 장애 등 개인적 특성 및 소질·적성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거나 경쟁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4	안 제10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선택할 권리)	(제2항)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의무규정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제2호의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습지원교육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경우에는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거나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5	안 제11조 (건강에 관한 권리)	(제2항)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휴식공간 등 적절한 시설을 운영하고 필요한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3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이 건강상의 이유로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재량규정
6	안 제12조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관한 권리)	(제2항)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에 대한 체벌, 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7	안 제13조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에 관한 권리)	(제2항)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교육환경을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3항)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을 충분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8	안 제19조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제2항)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3항)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제4항)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9	안 제20조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제2항)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식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10	안 제21조 (급식에 대한 권리)	(제2항)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항)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의무교육 과정에서의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11	안 제22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2항)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12	안 제26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항) 교육부장관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른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및 단계별 실천 전략 2. 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 방안 3.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학생인권 관련 조사·연구 방안 5. 학생인권 교육 실시 방안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 정부기관 및 시·도 교육청과의 협력 방안 7. 학생인권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8.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제3항)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안 제27조 (학생인권위원회)	(제1항)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공론 형성과 협력을 위하여 교육부에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2.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3. 교육정책 및 관련 제도·법령 정비에 대한 개선 권고 4. 학생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5. 학생인권과 관련된 기관과의 교류·협력 6. 학생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7. 그 밖에 학생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14	안 제29조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	(제1항)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이하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의무규정
15	안 제30조 (학생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항)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이하 “학생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학생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내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학생인권상황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3.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4.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개선 권고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6.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7.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8. 위원회·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9.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 주관의 학생인권영향평가 지원 10. 그 밖에 학생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 학생인권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한다. (제4항)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시·도 교육청에서 교사 또는 교육전문직으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학생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5항) 그 밖에 학생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6	안 제35조 (학생인권 교육 및 홍보 등)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학생 인권에 관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학생에게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17	안 제36조(학생인권의 날)	(제1항)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한다. (제2항)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학생인권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의무규정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35조	×	·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이 인권을 학습하고 인권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지원하며 교육정책 수립시 학생인권 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정지출 증가분을 산출하기 곤란하여 추계에서 제외
2	안 제26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등)	○	
3	안 제27조(학생인권위원회)	○	
4	안 제29조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	○	
5	안 제30조 (학생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	
6	안 제36조(학생인권의 날)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본 추계에서는 ①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안 제26조), ②학생인권위원회와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27조 및 안 제29조), ③학생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30조), ④학생인권의 날(안 제36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2024~2026)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준용함
 - 제정안은 교육부에 ‘학생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교육청에는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며, 본 추계에

서는 교육부와 현재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제정안의 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함

- 제정안은 각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며, 본 추계서에서는 유사 업무 수행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동 센터가 신설되는 것으로 가정
- 공무원보수상승률과 기관부담금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사용하며,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 － 안 제27조 및 안 제29조의 위원회와 안 제30조의 학생인권센터의 경우 2025년에는 하반기에만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은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며,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의 날 행사’관련 경비를 준용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학생인권종합계획’의 경우 5년 주기로 수립되므로 연구용역비가 2025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유사사례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을 준용
 -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4조¹⁾에 따라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학생인권종합계획(2024~2026)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음
 - 본 추계에서는 동 사례를 준용하되 예산이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하여 향후 5년간 총 4,9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를 예상²⁾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4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교 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참고로 법무부에서는 매 5년마다 국민을 위한 인권의 법적 보호강화와 제도적 실천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용역비로 2022년 5,750만원을 집행하였음.

[표 2]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안 제26조)	49	-	-	-	-	49	9.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학생인권위원회’와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은 위원수당에 대하여 추계하며³⁾,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의 경우 기설치·운영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교육부에 설치되는 ‘학생인권위원회’는 안 제28조에 따라 총 11명의 위원으로 하되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연간 분기별 1회씩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28조에 따라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현 시점에서 구체적 위원구성 등을 알 수 없으나, 안 제28조제2항에 따라 초·중등학교원 또는 판사·검사 등 공무원인 위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하며,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한 1인 1회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위원회 개최횟수 또한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우나 시·도교육청의 유사위원회 개최횟수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1회씩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

- (연간 추가재정소요: 2025년) 11인×20만원×2회 = 440만원

(연간 추가재정소요: 2026~2029년) 11인×20만원×4회 = 880만원

[표 3] 학생인권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학생인권위원회(안 제27조)	4.4	8.8	8.8	8.8	8.8	39.6	7.9

주: 법 시행일 등을 고려하여 2025년은 7~12월(하반기)에만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의 경우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3) 기타 운영비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기본경비 내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함

- 시·도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제정안의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인천·광주·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교육청으로 총 9개 교육청임⁴⁾
-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교육청에 민간위원 12인을 포함한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가 설립된다고 가정함⁵⁾
- 위원회 참석수당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1인 1회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위원회 개최횟수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우나 일부 시·도교육청의 조례를 참조하여 연간 4회 개최⁶⁾되는 것으로 함
- (연간 추가재정소요: 2025년) 12인(민간위원)×20만원×2회×8개 교육청 =3,840만원
(연간 추가재정소요: 2026~2029년) 12인(민간위원)×20만원×2회×8개 교육청 =7,680만원

[표 4]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 (안 제29조)	38.4	76.8	76.8	76.8	76.8	345.6	69.1

주: 법 시행일 등을 고려하여 2025년은 7~12월(하반기)에만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학생인권센터’ 설치·운영 비용은 기설치·운영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준용하여 관련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추계함⁷⁾

- 시·도교육청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기설치·운영되고 있는 경우 동 조직이 학생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함)로 재설립되는 것으로 하고, 유사 기능 조직이 없었던 경우 조직이 신설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 시·도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광주·울산·충남·전북·경남·제주교육청은 유사한 기능의 센터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대구·인천·경기·전남 교육청의 경우 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업무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있다고 회신⁸⁾

4) 2024년 6월 기준

5) 위원수와 관련하여 유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서울·인천교육청(20명), 광주교육청(16명), 경기교육청(17명), 충남·전북·전남·제주교육청(15명), 경남교육청(12명)의 사례를 참조하여 가장 다수의 교육청 위원수인 15명으로 가정하였음

6) 서울·광주·충남교육청 등의 경우 정례회를 연 4회 이상 개최할 것을 조례로 규정

7)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추계하며, 사업비의 경우 수행하는 사업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계에서 제외함

- 이에 본 추계서에서는 총 12개 교육청에서는 기존의 조직이 제정안의 센터로 전환되고⁹⁾, 나머지 교육청에는 센터 조직이 신설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신설되는 5개 센터조직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
- (센터장) 안 제30조제4항에 따르면 학생인권옹호관은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되어야 하므로, 유사한 기능의 조직이 없거나 조직의 장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우 또는 6급 이하인 교육청 등에는 5급 상당의 학생인권옹호관¹⁰⁾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함¹¹⁾¹²⁾
- (직원) 제정안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이 임명되는 경우 이의 지원을 위한 직원의 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¹³⁾, 기존 유사조직이 없는 교육청에 대하여 6급 상당 임기제공무원 1명이 신규 임용되는 것으로 가정함¹⁴⁾
- (기본경비) 신규임용되는 센터장과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경비(기본경비)로 '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성질별 세출본예산을 준용한 6.54%를 계상

8) 2024년 6월 기준

9) 전환에 따른 안내자료 변경 등과 관련된 비용은 기관의 기본경비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10)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개방형직위의 지정)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 시·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임기제 4급 상당 공무원을 임용 중인 서울·전북(병렬)교육청과 임기제 5급 상당 공무원을 임용 중인 경기·충남·경남교육청을 제외한 12개 교육청에 신규 임기제 5급 상당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으로 함

12) 경기교육청의 경우 ‘권역별’로 임기제공무원 3명(5급 상당 1명, 6급 상당 2명)을 임용하고 있으며,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중 1명이 센터장으로 임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센터’가 별도로 설립되어 센터의 장을 추가로 임용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음

13)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에 전문성을 갖춘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전북·충남 등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14) 학생인권옹호관을 지원하는 직원의 직급 등은 기존 시·도교육청의 관련 업무 담당 직원 중 장학사 또는 6급 상당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정하였음

[표 5] 학생인권센터 설치·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학생인권센터 설치·운영 (안 제30조)	인건비	672	1,371	1,398	1,426	1,454	6,322	1,264
	기본경비	39	79	81	82	84	365	73
	합 계	711	1,450	1,479	1,508	1,538	6,687	1,337

주: 1) 학생인권센터 기능의 조직이 없거나, 조직의 장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우 또는 6급 이하인 교육청 등에 5급 상당의 학생인권옹호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임
 2) 학생인권옹호관 지원을 위하여 제정안의 학생인권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는 교육청에 6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을 각 1명씩 임용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임
 3)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연봉 상·하한액¹⁵⁾¹⁶⁾ 중간값에 국회예산정책처의 공무원 보수상승률 및 공무원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 전망치 적용 금액을 합산한 결과값임
 4) 2025년의 학생인권센터 설치·운영비는 법 시행일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 6개월에 대하여만 계상
 5)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값으로 가정 등이 변동될 경우 결과값은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학생인권의 날’ 관련 비용은 유사사례인 ‘인권의 날’ 행사경비를 준용하여 추계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24년 ‘인권의 날’ 행사 경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본 추계에서는 이와 유사한 규모로 ‘학생인권의 날’ 행사 및 사업이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
 -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인권의 날 행사 진행경비로 기념식장 임차 3백만원, 행사 용역 2,000만원, 사업추진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한민국인권상 수상자 포상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음

1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5. 임기제공무원 중 나.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연봉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87,989	50,012

1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표

5. 임기제공무원 중 가. 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연봉등급	상한액	하한액
6급(상당)	81,239	54,132

[표 6] 학생인권의 날 행사 및 사업 비용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학생인권의 날(안 제36조)	40	40	40	40	40	200	8.8

주: 1) 학생인권의 날이 하반기(7~12월)에 지정되는 것을 가정한 것이며, 상반기로 지정될 경우 재정소요가 감소할 수 있음

2) 유사사례인 '인권의 날' 행사경비 등을 준용한 값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가재정소요) 제정안에 따라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인권위원회·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며,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8억 4,300만원, 2029년 16억 6,4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73억 2,100만원(연평균 14억 6,4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1]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학생인권종합계획(안 제26조)	49	—	—	—	—	49	9.8
학생인권위원회(안 제27조)	4.4	8.8	8.8	8.8	8.8	39.6	7.9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안 제29조)	38.4	76.8	76.8	76.8	76.8	345.6	69.1
학생인권센터(안 제30조)	711	1,450	1,479	1,508	1,538	6,687	1,337
학생인권의 날(안 제36조)	40	40	40	40	40	200	40
합 계	843	1,576	1,605	1,634	1,664	7,321	1,464

주: 1) 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2) 학생인권센터 기능의 조직이 없거나, 조직의 장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우 또는 6급 이하인 교육청 등에 5급 상당의 학생인권옹호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임

3) 학생인권옹호관 지원을 위하여 제정안의 학생인권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는 교육청에 6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을 각 1명씩 임용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임

4)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연봉 상·하한액 중간값에 국회예산정책처의 공무원 보수상승률 및 공무원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 전망치 적용 금액을 합산한 결과값임

5)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값으로 가정 등이 변동될 경우 결과값은 변경될 수 있음

6) 법 시행일 등을 고려하여 2025년의 위원회(안 제27조 및 안 제29조) 및 학생인권센터(안 제30조)의 설치·운영비는 하반기(7~12월) 추계액만을 계산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